



1.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눈다.

(1)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2)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당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과 관련돼 세금을 절세하려면

(1)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2)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하며,

(3)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한다.

탈세의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1) 수입금액 누락
- (2)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
- (3)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4) 허위계약서작성 또는 명의위장
- (5)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3) 신고, 납부의 의미 및 요령

(1) 종합소득세의 경우

- 신고, 납부는 세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개인의 경우 2009년도 분은 2010년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2) 면세사업현황신고

- 신고, 납부하기 전의 단계로 2009년도 분은 2010년도 1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2009년도 분 수입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기재한 신고서로 종합소득세의 바탕이 된다.

즉, 2009년도 분을 매월 기장하여 합계금액을 옮겨놓은 서식이다.

4) 영세율, 면세의 의미 및 적용분야

영세율이란 과세대상이나 일반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정부가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세제한특별법에서 면세사업자 중 농가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일부 약품 등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해 준다.

5) 세금의 환급범위 및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약품 등을 구매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거서류이며 제출대상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농협이나 축협에 분기별로 세금계산서사본을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

>> 세무정보 >>

때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원본은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4) 작성 연월일

6) 세금절약을 위한 기타 고려사항

- (1)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질 사업자가 세금 등을 체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책임을 진다.

- (2)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라.

최근에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사실 확인을 해야 하며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한다.

- (3)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 (4)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 (5)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무기장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등을 받는다.

- (6)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하면 된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하다. 간편장부 작성 시 혜택은 기장세액공제, 이월결손금공제, 기타 필요경비 인정 등이 있다.

- (7)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어라.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금융을 통하여 거래한 부분은 사실확인이 가능하므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 (8)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라.

의무불이행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



지난 8월 31일~9월 3일까지 충북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가진 제2기 여성농민 목장경영 전문화 교육에서 세무교육을 받는 장면.

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계산서 합계표미제출),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사업장신고불성실가산세 등.

2. 세무사의 역할

1)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일

세무신고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공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장업무와 세무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다양한 업종과 개인이나 법인 등 신고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고 납세자에게 기장과 신고 시기를 미리 알려 불이익(가산세 등)이 없도록 하는 일을 한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절세의 방법 등을 알려준다. 일반 납세자가 사업을 하면서 기장과 신고업무를 하기에는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어려움이 많다.

구체적인 업무는 근로자 급여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증빙서류 기장업무, 세무서와 납세자간의 대리업무, 조세불복업무, 양도소득세신고, 상속증여세신고 등을 들 수 있다.

2) 업무를 대행해 주는 방식

(1) 분기별로 자료를 받아 기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3개월분의 매출과 매입, 기타증빙서류를 사무실로 보내주어야 한다. 직원이 자료를 받아 회계프로그램에 입력작업 등을 한다. 단점은 납세자가 매월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2) 납세자가 증빙서류 등을 엑셀이나 기타 방법으로 작성하면 전문 회계프로그램에 재입력하여 전자 신고

>> 세무정보 >>

하는 경우이다. 납세자가 자료를 입력하기 때문에 매월 이익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 증빙자료 및 신고서 등의 보관

세무사 사무실에서 증빙자료나 신고서류는 체계적으로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며 일정시기가 되면 납세자에게 전달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예 : 2008년도 신고 분은 2009년도 5월 말에 종합소득세신고 기한이므로 2009년 6월 1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즉 2008년도 분은 2014년 5월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계정과목 등 세부사항

과거와 달리 알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충실히 지켜주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아래에 기초적인 사항을 기술하였으니 잘 파악하여 사업을 하는데 참고하였으면 하는 바이다.

1)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약품 등의 부가세 환급

(1) 세금계산서 사본을 가까운 농협이나 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2) 각 분기 분은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한다. (예 : 1분기 분은 4월 25일까지 제출)

3) 축사건축

(1) 축사를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고정자산이다.

(2)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 2009년 수입분은 2010년 5월에 신고함)

4) 4대보험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비중이 높아 부담이 클 수 있다.

5) 인건비

(1)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일용직(아르바이트)은 고용, 산재보험만 납부하면 된다.

6) 학원비

(1) 본인이나 직원의 학원비는 교육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 자녀 학원비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7) 의료비

(1) 사업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본인과 직원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 자녀 기타 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8) 청첩장, 부의금

(1) 청첩장과 부의금은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 청첩장은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부의금은 지출결의서나 메모장에 관계, 발인장소, 날짜, 장례식장을 기재하면 된다.



9) 기타 비용

(1) 복리후생비 : 직원식사, 간식, 아유회비용 등

(2) 전력비, 차량유지비, 가스비, 수도료, 운반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통신비, 이자비용 등

10) 절세방안

(1)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영수증(상대거래처명판과 날인)을 꼭 챙겨야 한다.

★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 세법으로 부여한 법정 납세협력 의무로서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근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부과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